

# 우 사람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박상중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인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초판만 호텔 PSPD, 나무우리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담당: 이강준간사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특검제 철폐 향의 집회  
날 짜 1998. 12. 7. (총 5쪽)

## 보도자료

###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집회

집회후 국회의 총재권한대행에 항의서 전달

일시 및 장소: 1998년 12월 7일(월) 12시~13시 국회 앞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종배, 박상중) 시민로비단 20여명은 12월 7일(월) 12:00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국회의의 특별검사제가 빠진 부패방지법 확정안에 대해 항의·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 집회 후, 1시 30분부터 시민로비단은 국회의 조세형 국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국회의의 부패방지법안에서 당초의 법안에서 특검제를 뺐 것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고위공직자 비리 특별 수사처(특검제)'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별첨

1. 항의서한
2. 법사위 의원 질의서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중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보안 호텔 PSPD, 나무나라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맑은사회-981207  
수 신 새정치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  
발 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간사: 이태호 국장, 723-5302)  
제 목 부패방지법 입법 후퇴 관련 항의서한  
날 짜 1998. 12. 7. (총 2 쪽)

## 특별검사제도 철회는 검찰 기득권에 대한 반부패개혁의 항복선언입니다.

1. 국정수행을 위한 귀 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저희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12월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으로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이래로 부패방지법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98년 11월 현재 국회의원 244명이 이 법안의 제정에 동의서명한 상태입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제정을 약속한 최대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귀 당과 자민련,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저희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公翰을 통해 제정 찬성 입장을 공표하는 등 이미 정치권과 국민여론 모두의 합의 속에 추진되고 있는 핵심 개혁입법입니다.
4. 특히 부패방지법의 일부이기도 한 '특별검사제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귀당에서 96년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 박상천 의원을 대표로 72명 전원이 서명한 입법안을 발의 한 바 있는 최대 핵심현안 중 하나입니다.
5. 그런데 최근 귀 당에서 밝히신 부패방지법 당론은 지난 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및 귀 당의 입법발의안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검사제) 신설 방침이 검찰 내 공직자비리전담 특수부"로 바뀌는 등 심각한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존재했던 검찰내 특수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이른바 "공무원범죄전담 특수부"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그리고 검찰 자신을 검찰 스스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조사 처벌한 적이

과연 한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던 말입니까?

6. 귀 당의 이러한 후퇴를 두고 귀 당에서는 특별검사제의 위헌여부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도 한시적으로 대통령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등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미국에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국민회의 스스로가 이미 야당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찰과의 논쟁에서 논박했던 내용이므로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사권 분리 또한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건전한 경쟁세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검찰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과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7. 이 번 특별검사제 철회는 “검찰의 기득권 로비에 김대중 대통령 이하 여당의원 전원이 굴복한 결과로서 개혁의 패배요 부패척결의지의 실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당이 된 오늘에 와서 특별검사제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오랜 야당생활을 거쳐 집권한 공당이 해서는 안될 유권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8.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귀당이 당론 후퇴를 철회하고 특별검사제에 대한 도입 약속을 온국민 앞에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귀당이 약속한 부패방지법안의 다른 조항들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촉구합니다.

9.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실제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종합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 시민로비단